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서울동부지방검찰청** 전문공보관 신형식 전화 02-2204-4201	**보 도 자 료** **2022. 1. 10.(월)**

제 목

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여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뇌물 수수한 공무원 등 구속기소

- 경찰과 협업, 이석준에게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일당 검거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개금지정보(제11조 제2항 제3호, 제7조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9조 제1항 제2호, 제9조 제4항 제1호 나목, 다목, 제12조 제1항 제1호)

※ 2022. 1. 7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형사부(부장검사 이성범)는 금일(1. 10.) **'20. 1.경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,101건을 불법 조회하여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, 그 대가로 3,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였음**(관련자 3명은 구속수사 중)

- 특히, 검찰은 위 공무원에 대한 **여죄 수사 과정에서** 해당 공무원이 **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**하여,
  - 이석준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들을 순차적으로 수사 중이던 **서울송파경찰서와 수사정보를 공유**하고,
  - 검찰이 발부받은 **체포영장을 합동으로 집행**하여 **미검거 흥신소 업자를 검거**하는 등 송파서와 적극 협업하여 수사함으로써
  - 위 공무원이 **피해자의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이후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된 유출과정을 명확하게 규명**하였음

1 피고인

- A○○(40세, ○○구청 공무원)
- C○○(37세, ㄱ흥신소 직원)
- F○○(37세, ㄷ흥신소 업자)

※ B○○(40세, ㄱ흥신소 업자), D○○(47세, ㄴ흥신소 동업자), E○○(47세, ㄴ흥신소 동업자)은 각각 구속수사 중

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 전달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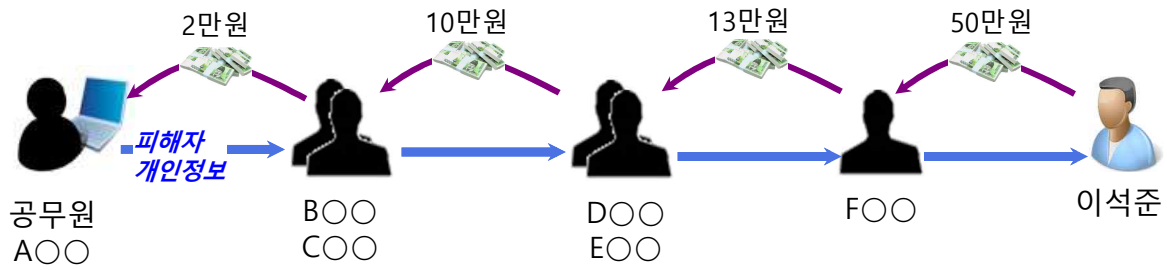

2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
  - '20. 6. ~ '21. 12. 주소,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,101건 조회 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 【개인정보보호법위반】
  - '20. 1. ~ '21. 10. 개인정보 제공대가로 3,954만 원 뇌물수수 【특가법위반(뇌물)】
- C○○
  - '20. 6. ~ '20. 12. 주소 등 개인정보 1,081건 판매 【개인정보보호법위반】
  - '20. 1. ~ '21. 1. A○○에게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2,924만 원 뇌물교부 【뇌물공여】
- F○○
  - '20. 7. ~ '21. 12. 개인정보 52건 판매 【개인정보보호법위반】
  - '20. 12. ~ '21. 12. 위치추적기 3회 무단 설치 【위치정보보호법위반】

3 수사 경과

- ’21. 6. 1. 사경,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송치[1)]
  ※ 정보 제공 흥신소 업자 불특정
- ’21. 6.~10. 모바일 포렌식, 계좌내역 분석 등으로 정보제공 흥신소 업자 C○○ 특정
- ’21. 11. 17. C○○ 체포/ 11. 19. 구속/ 12. 2. 구속기소
- ’21. 12. 13. A○○ 체포/ 12. 15. 서울동부지법, 구속영장 기각
  ※ ’20. 6. ~ 12. 개인정보 불법조회·제공 및 뇌물수수
- ’21. 12. 14. **【서울송파서】** 이석준 살인사건 발생 후 흥신소 업자 F○○ 체포/ 12. 16. 구속
- ’21. 12. 20. A○○ 재체포/ 12. 21. 구속
  ※ ’21. 12. 살인피해자 개인정보 불법조회·제공 및 ’20. 12~’21. 6. 뇌물수수 추가 확인
- ’21. 12. 27. **【서울송파서】** D○○, E○○ 각 체포/ 12. 29. 각 구속
- ’22. 1. 5. **【검·경 합동】** B○○ 체포/ 1. 7. 구속
- ’22. 1. 10. A○○, F○○ 각 구속기소/ C○○ 추가 기소

4 수사 결과

- 흥신소 업자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모바일 포렌식, 계좌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를 활용한 끈질긴 수사로 개인정보 조회 공무원 및 흥신소 업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음

1) 흥신소 업자를 통해 전처의 주소를 알아낸 후 전처의 집으로 전기충격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협박 등을 한 사안의 흥신소 업자 G○○ 사건

- 개인정보조회 공무원 A○○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**차적조회 권한을 이용**, 텔레그램 광고 '고액 알바 모집'을 통해 알게 된 B○○ 등에게 약 2년 동안 주소 등 **개인정보 1,101건을 조회하여 제공**하고 그 대가로 조회건수를 정산하여 **매월 200 내지 300만 원씩 수수하는 등 총 3,954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함**

※ A○○가 소속된 관서에는 **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**도 확인하였음

- 또한 흥신소 업자들은 **대포폰,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**하고 그 대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음

● **검찰**과 **서울송파경찰서는**, 흥신소 업자를 추적하던 중 A○○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서 D○○에게 전달해 준 **B○○를 공통으로 추적 중인 사실을 확인**하고, **수사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으로 B○○를 검거**하는 등 **검·경 수사협업으로** 조회공무원인 A○○부터 이석준에 이르기까지 **개인정보 전달 과정을 명확히 규명**하게 되었음

- **검찰은, A○○ 검거 후** 여죄 수사과정에서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주소 조회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중개한 **흥신소 업자 B○○를 특정하여 추적함**

- **서울송파경찰서는**, 이석준 살인사건 발생 직후 **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** 이석준에게 피해자 주소 정보를 판매한 **흥신소 업자 F○○, D○○ 등을 순차 검거**하였고, 그 상선인 **B○○도 특정**하여 수사를 진행함

● 향후에도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 유출 범행 등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예정임